

부산지방법원 2023. 1. 12 선고 2022가단34052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3. 1. 12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부산 동구 D 대 29.8㎡ 중 1/3 지분에 관하여 2020. 9. 7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C에게 위 1/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, 제257조)

판사 이우철

별지